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 추가〉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5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 추가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7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 추가

개정안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u> 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u> ----- ----- ----- -----.
<신설>	1.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u>
<신설>	2.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u>
<신설>	3. <u>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조의3¹⁾,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²⁾ 및 제1조의4³⁾에서는 강우시 하수관로 막힘 등으로 인한 하수 범람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의 범람으로 공공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도정비침수 현황,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우수관로 증설 및 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저류시설

- 1) 「하수도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3)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확충 등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참고로, 2024년 기준 총 210개소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중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이 완료된 지역은 57개소(27.1%)이며, 2024년 예산 3,275억원을 포함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중점관리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투입된 총예산은 약 1조 4,555억원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지정	210	21	11	11	10	11	12	12	26	21	38	21	16
준공	57	18	10	10	9	6	1	-	1	1	1	-	-
공사 중	45	2	-	1	1	5	7	11	13	2	2	1	-
설계 중	108	1	1	-	-	-	4	1	12	18	35	20	16

자료: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원 현황]

* 지난 10년간('14~'23년) 국고보조 약 1조 4,555억원 지원

○ (예산) '23년 1,541억 원 → '24년 3,275억 원 → '25년 3,138억 원

※ (국고보조율) '23년 이후 광역시 30%, 시·군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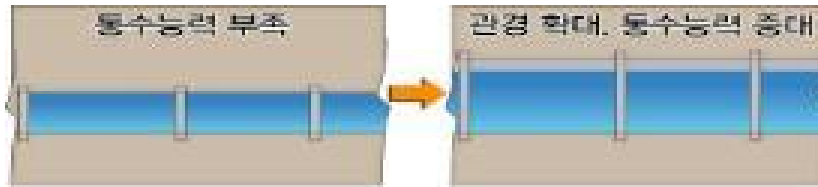
'23년 이전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자료: 환경부

중점관리지역에 투입된 예산은 통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하수관경 확대, 하수관 교체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관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지하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저류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설 등의 사업에 사용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내용]

- (하수관) 강화된 시설기준(5~10년 → 10~30년)에 맞춰 하수관경 확대



< 하수관로 통수능력 확보 >

- (저류시설) 하수관 교체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관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지하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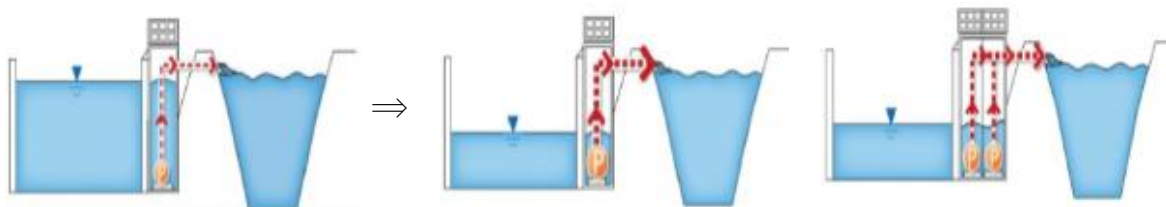


< 지하 저류시설 >



< 터널형 저류시설 >

- (펌프장) 하수관 확충과 연동하여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을 증설



< 펌프장 용량 부족 >

< 대용량 펌프로 교체 >

< 펌프장 추가 증설 >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동 조항에 따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취지는 집중강우 시 하수구 용량 초과에 따른 침수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기준은 하수의 범람 또는 범람 우려에 한정됨.

개정안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지반 침하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반 침하는 연도별 100~200건 사이로 매년 발생하고 있고, 하수관 손상이 발생 원인의 가장 큰 부분 (약 50%)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지정 대상에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추가할 경우 보다 원활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지반 침하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월
	계	998	193	284	142	177	161	41
하수관 손상		464 (46.5%)	98 (50.8%)	134 (47.2%)	61 (43.0%)	84 (47.5%)	69 (42.9%)	18 (43.9%)
상수관 손상		45 (4.5%)	8 (4.1%)	7 (2.4%)	9 (6.3%)	7 (3.9%)	8 (5.0%)	6 (14.6%)
기타매설물 손상		67 (6.7%)	8 (4.1%)	19 (6.7%)	5 (3.5%)	12 (6.8%)	20 (12.4%)	3 (7.3%)
굴착공사 부실		87 (8.7%)	10 (5.2%)	17 (6.0%)	20 (14.1%)	22 (12.4%)	13 (8.1%)	5 (12.2%)
다짐(되메우기) 불량		175 (17.6%)	22 (11.4%)	57 (20.1%)	28 (19.7%)	31 (17.5%)	33 (20.5%)	4 (9.8%)
상하수관 공사 부실		28 (2.8%)	3 (1.6%)	15 (5.3%)	3 (2.1%)	4 (2.3%)	2 (1.2%)	1 (2.4%)
기타매설 공사 부실		19 (1.9%)	8 (4.1%)	1 (0.3%)	0 (0.0%)	2 (1.1%)	7 (4.3%)	1 (2.4%)
기타		113 (11.3%)	36 (18.7%)	34 (12.0%)	16 (11.3%)	15 (8.5%)	9 (5.6%)	3 (7.4%)

자료: 지하안전 통계(국토부)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 대상 조항인 제4조의3 및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바, ‘하수관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 우려’의 사유는 동 조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동 조항의 개정 당시(2012) 개정 이유는 집중강우 시 하수구 용량 초과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환경공단 또한 해당 조항의 목적에 지반 침하 우려를 포함하는 것은 당초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둘째, 개정안에서 목적으로 하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동법 제63조4)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이미 수행 중⁵⁾이고, 환경부는 2014년부터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하여 정밀 조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 상황⁶⁾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을 지반 침하 우려 지역으로 판단·지정하기

4)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5) 하수관로정비(1132-312)

* (노후하수관로정비 예산 현황) '23년 1,413억 원 → '24년 1,930억 원 → '25년 2,596억 원

6)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연혁은 다음과 같음.

- '14.12 : 관계부처 합동 지반침하 예방대책 수립(국가정책조정회의)
- '15.1.27 : 국민안전특위 “상하수도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원인 및 대응대책” 보고
- '15.4.17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지반침하대응대책” 보고
- '15~'16: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정밀조사 추진
- '17.3 :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대책 마련(환경부)
- '19.3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계획 수립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상관관계 파악이 어려운 점, 지반 침하가 이미 발생한 지역은 긴급 재난복구를 통해 신속히 관로 정비 등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총 210개소 지정('13~'24)

구분	지정 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210	21	11	11	10	11	12	12	26	21	38	21	16
서울	2	-	-	-	-	-	-	-	-	-	2	-	-
부산	14	-	-	2	-	1	1	1	3	2	1	2	1
대구	4	-	2	-	-	-	1	-	1	-	-	-	-
광주	4	-	-	-	-	-	-	-	-	-	2	2	-
대전	3	-	-	-	-	1	1	-	1	-	-	-	-
세종	2	-	-	-	-	-	-	1	-	1	-	-	-
경기	26	3	1	2	-	1	1	1	1	2	4	7	3
강원	21	2	1	-	-	-	-	-	3	3	6	-	6
충북	21	-	-	-	-	2	1	4	2	4	6	-	2
충남	20	6	1	-	-	1	1	-	1	2	2	5	1
전북	5	1	1	-	1	-	-	-	-	-	1	-	1
전남	34	5	1	3	4	1	2	1	8	1	6	1	1
경북	28	1	2	2	2	-	2	1	5	5	5	2	1
경남	22	3	2	2	2	4	2	3	1	1	1	1	-
제주	4	-	-	-	1	-	-	-	-	-	2	1	-

자료 : 환경부